

『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법」 개정(법률 제17769호, 2020.12.29)으로 주민세 용어와 과세체계 및 세율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(안 제6조~제8조)

(개정 전)

(개정 후)

균등분(개인)

⇒

개인분

균등분(개인사업자)

균등분(법인)

재산분

종업원분



⇒

사업소분

⇒

종업원분

-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현행화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세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인 「지방세법」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주민세의 세세목 명칭을 5개에서 3개로 변경하고,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며 과세체계와 세율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